

## ◎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◎

1. 계약기간 :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(계약기간)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, 장기요양 1~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함.
2. 계약목적 : 입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.
3.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: 시설급여

(2026. 01. 01.)

| 구 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  | 2등급    | 3·4등급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요양급여        | 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<br>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| 74,590 | 69,210 | 63,800 |
| 비<br>급<br>여 | 식재료비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| 3,000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간식비(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상급침실 이용료 및 이/미용료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|        |        |

### 4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 :

#### - 권리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.
- 2)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3)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4)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6)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

#### - 의무

- 1)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)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)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- 5) 간호 및 간병 입, 퇴소 절차, 병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등

### 5. 계약의 해제

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르르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